

기부 규정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(주)LX판토스(이하 "회사")의 사회공헌활동 중 일부인 기부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함으로써, 회사의 사회공헌활동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, 회사의 기부행위에 있어 대외적 투명성, 절차적 정당성 및 적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회사가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제공하는 모든 기부, 후원, 지원, 출연 등에 (이하 "기부") 적용된다.

제 3 조 (기부 기준)

1. 회사는 아래 대상에는 기부하지 않는다.
 - ① 개인
 - ② 정치 단체
 - ③ 종교 단체
 - ④ 스포츠팀
 - ⑤ 동창회, 종친회 등 사적 모임 또는 단체

2. 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부한다.
 - ① 회사의 사회공헌목적에 부합해야 함.
 - ②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과 기부 요청자 또는 대상자간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.
 - ③ 형법,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

제 4 조 (승인 절차)

전결권규정 등 사규에 따른 승인권자는 제3조 (기부 기준)에 따라 기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, 1천만원 이상 기부의 경우에는 제6조 (기부 심의회)에 따른 기부 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. 단

기부 규정

제 5 조 (예외 사항)

태풍, 홍수, 화재,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구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제3조(기부 기준)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, 기부 심의회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 6 조 (기부 심의회 및 사무국)

1. 기부 심의회는 ESG팀장, 홍보/대외협력팀장, 재무회계팀장, 법무/준법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.
2. 기부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역할은 ESG팀이 수행하도록 한다.
3. 사무국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대상 기부의 요청자, 요청 과정, 기부 대상, 기부 사용 목적 및 계획 등을 충실히 파악해 기부 심의회가 제3조 (기부 기준) 부합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지원한다.
4.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기부 심의회를 소집·개최하고 기부 안건을 부의해 기부 심의회가 제3조(기부 기준)의 부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5. 기부 심의회 및 사무국은 심의대상 기부가 제3조(기부 기준)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기부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7 조 (주관 부서)

본 규정의 주관부서는 ESG팀으로 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2일 부로 제정·시행한다.

제정일자 : 19. 11. 12

Ver 1.3

기부 규정

【 제·개정 이력】

개정 번호	개정 사유 및 내용	개정 일자
Version 1.0	최초 제정	2019.11.12
Version 1.1	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	2020.01.01
Version 1.2	사명 변경 적용	2021.07.01
Version 1.3	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, 규정 주관부서 이관	2022.03.01